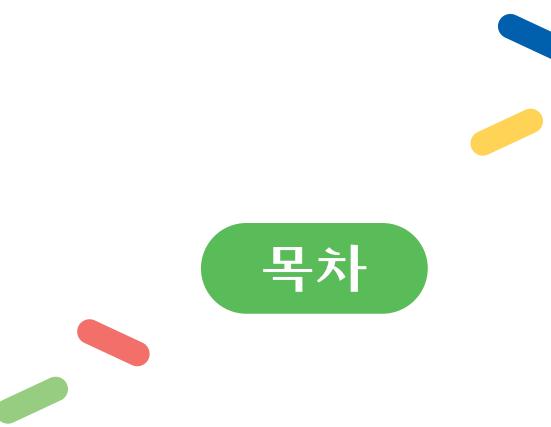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활동 결과보고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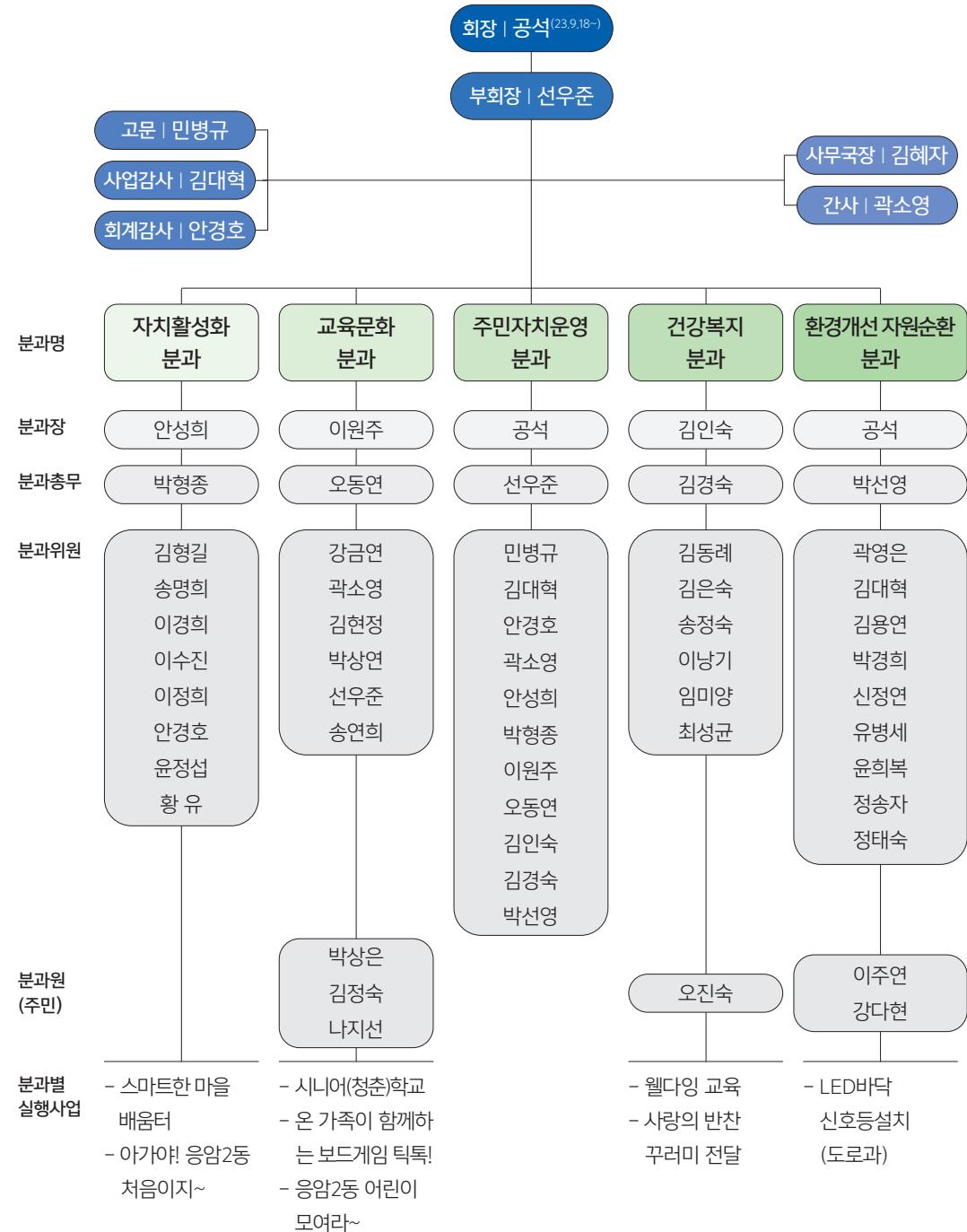
1/ 응암2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6
2/ 응암2동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 및 현황	07
3/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08
4/ 응암2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10
5/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12
6/ 2024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사업선정 보고	16
7/ 2023년 응암2동 주민총회 결과 및 사진	17
8/ 2023년 응암2동 실행사업 홍보물, 사진	23
9/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활동 사진	26
10/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3.8.17.개정)	28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가 달려온

발자취



응암2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응암2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마을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의 문제 등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암2동 주민 대표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총원	성별		연령별			모집 구분			
	남	여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개인	단체
38	12	26	2	8	13	13	2	31	9

주민자치회 운영진 현황

회장	부회장	감사 2	고문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 및 분과 총무
-	선우준	김대혁 안경호	민병규	김혜자	곽소영	안성희, 박형종, 이원주, 오동연 김인숙, 김경숙, 박선영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현황

분과명	분과장/총무	위원	주요사업·활동
자치활성화 분과	안성희 박형종	김형길, 송명희, 이경희, 이수진, 이정희, 안경호, 윤정섭, 황유	자치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마을 교육
교육문화 분과	이원주 오동연	강금연, 곽소영, 김현정, 박상연, 선우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및 문화 관련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운영분과	선우준	민병규, 김대혁, 안경호, 곽소영, 안성희, 박형종, 위원주, 오동연, 김인숙, 김경숙, 박선영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주요사업 추진 공유
건강복지 분과	김인숙 김경숙	김동례, 김은숙, 송정숙, 이낭기, 임미양, 최성균, 오진숙	건강, 돌봄 및 이웃 간 관계회복
환경개선 자원순환 분과	정송자 박선영	곽영은, 김대혁, 김용연, 박경희, 신정연, 유병세, 윤희복, 정송자, 정태숙, 이주연 강다현	생태환경, 자원순환, 도로와 골목의 안전과 환경개선

2023.11.기준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2023.01

- ▶ 2020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정기회의 (대면)
- ▶ 임원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장 선출)
- ▶ 전년도(2022년) 회계 감사

2023.02

- ▶ 분과 구성 및 인사, 회의 일정 결정.

2023.03

- ▶ 마을 발전 아이디어 공모
- ▶ 의제발굴 지원 컨설팅 추진 (환경분야 의제발굴워크샵 1, 2차)



2023.11

- ▶ 사랑의 반찬꾸러미 전달 (2회, 96명분)
- ▶ 하반기 웨딩 톨강(2회) 운영
- ▶ 스마트한 마을배움터(4회) 운영
- ▶ 아가야! 응암2동은 처음이지~ 출산 꾸러미 포장
- ▶ 매바위 작은 전시회(스마트한 마을배움터) 개최(23.11.28~29)
- ▶ 임원(회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1차)

2023.12

- ▶ 자매결연지(안산시 대부분 흘꽃 마을) 교류 및 워크숍(23.12.12)
- ▶ 임원(회장) 선출관리위원회 회의 (2차, 3차), 결과 보고 및 해산
- ▶ 2023년 12월 정기회의 (23.12.21.목)
- ▶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 공유회(23.12.21)

2023.04

- ▶ 사랑의 반찬꾸러미 전달(60명분)
- ▶ 시니어 청춘학교(입학식 43명)
- ▶ 마을발전 주민제안 접수(14건)
- ▶ 운영세칙 준비위원회 회의 (4.14~5.16 3차)
- ▶ 마을 돌아보기 및 조사 활동, 분과원 모집(4명)
-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샵 (칠원 주상절리)

2023.05

- ▶ 분과별 의제발굴 및 주민공론장 운영
- ▶ 1동 1대학 연계 「은평대학·명지 대미래교육원」 협약식 체결
- ▶ 사랑의 반찬꾸러미 전달(60명분)
- ▶ 아가야! 응암2동은 처음이지~ 출산 꾸러미 포장(2차) 및 전달
- ▶ 웨딩 톨강 1차(17명)
-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 발굴의제 부서검토 제출(22건)
- ▶ 사랑의 반찬꾸러미 전달(60명분)
- ▶ 아가야! 응암2동은 처음이지~ 출산 꾸러미 포장(2차) 및 전달
- ▶ 웨딩 톨강 1차(17명)
-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 응암2동 어린이 모여라 「출동! 나비원정대」 행사 진행
- ▶ 공론장 및 주민총회를 위한 퍼실리레이터 교육
- ▶ 시니어 청춘학교 소풍 개최

2023.07

- ▶ 주민총회 슬로건 공모
“더불어 함께 소통하GO! 주민들과 결정하GO! 응암2동 행복하GO!”
- ▶ 스마트한 마을배움터 친환경 보자기 포장법 총 3차(60명)
- ▶ 스마트한 마을배움터 정리수납의 힘 기르기 총 4차(102명)
- ▶ 아가야! 응암2동은 처음이지~ 출산 꾸러미 포장 3차 및 전달
- ▶ 시니어 청춘학교 졸업식(졸업35명)
- ▶ 온가족이 함께하는 보드게임 틱톡! 교육 후 대여(4회 40명)
- ▶ 2023년 상반기 감사 준비 및 실시 보류, 행정 지도점검



2023.09

- ▶ 24년 마을의제 사전투표 마감 및 주민총회 리허설
- ▶ 제5회 응암2동 주민총회 개최 (23.9.14. 목. 10시)
- ▶ 참여 : 참여예산 총회(23.9.16),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23.9.23)
- ▶ 아가야! 응암2동은 처음이지~ 출산 꾸러미 포장 4차 및 전달
- ▶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개정 (2023.8.17. 정기회의)
- ▶ (2023년 상반기) 행정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

2023.08

- ▶ 참여 :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23.10.7), 합동 현혈캠페인(23.10.10)
- ▶ 스마트한 마을배움터(총 10회) 운영 : 파스텔캐리커쳐 6회, 김수미- 두건 2회, 앞치마만들기 2회, 가방만들기 3회
- ▶ 아가야! 응암2동은 처음이지~ 출산 꾸러미 포장
- ▶ 웨딩 교육(4회) 운영
- ▶ 사랑의 반찬꾸러미 전달(60명분)



응암2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 개요

근거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3항
감사일시	2023. 7. ~ 8.
감사장소	응암2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회의실
감사	회계감사 안경호, 사업감사 김대혁

감사 내용

2023년 주민자치회 지도점검 지적사항 내역

동	사업구분	순번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적사항
응암2동 (64건)	사업 운영비	26 ~ 84	1월~ 6월	-	사무국장이 보조금 지출 시 주민 자치회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지 지 않아 지출서류에 회장, 부회 장, 간사 직인 미날인 (43건 1월~6월)
			1월~ 6월	-	사무국장이 보조금 지출 시 주민 자치회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지 지 않아 지출서류에 회장, 부회장, 간사 직인 미날인 (15건 1월~6월)
		85	23. 03.04.	강사료 1급 기준 적용 지급(박*정, 674,880원)	강사비 지급 증빙자료 누락
		86	23. 04.01.	강사료 1급 기준 적용 지급(신*정, 674,880원)	강사비 지급 증빙자료 누락
		87	23. 04.21.	강사료 1급 기준 적용 지급(박*정, 674,880원)	강사비 지급 증빙자료 누락
		88	23. 05.29.	강사료 1급 기준 적용 지급(박*정, 565,440원)	강사비 지급 증빙자료 누락
		89	-	-	강사비 원천세 납부 지연 (3건, 23.03.04., 23.04.01., 23.04.21.)
	주민자치회 운영	90	-	-	임원선출관리 위원회 직인관리대장 누락

특히 사항

행정 지도점검 후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구두발표로 감사 보고
(9월 정기회의)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구 분	응암2동 주민자치회
지 적 사 항 (제목 및 지적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결의에 직인 미날인 - 사무국장이 보조금 지출 시 회장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회장, 부회장, 간사 직인 미날인 강사비 지급 증빙자료 누락 4건 - 23.03.04. ~ 23.04.01. - 23.04.21. ~ 23.05.29. 강사비 원천세 납부 지연 3건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직인관리대장 누락
조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 증빙서류 보완 - 지출내용 확인 후 직인 날인 강사비 지급 증빙자료 첨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첨부 4건 향후 매월 원천세 납부 예정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직인관리대장을 별지로 작성 보관
완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증빙자료	<p>별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결의서 58건(스캔파일) 증명서 4건(스캔파일) 직인대장(별지 스캔) 2장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동) 지역사업 7건

● 웰다잉 교육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건강복지분과

사업내용 웰다잉(well-dying)의 중요성 인식,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남은 삶에 대한 준비

사업결과 총 8회 교육(217명 참석)

실행기간 2023.3.~2023.11.(상하반기 특강 4회, 정규 4회 운영)

수혜대상 응암2동 주민 등 신청자 217명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 교육내용에 유서쓰기 등을 기대했는데 깊이와 성찰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 ⇒ 참여자 모집이 예상보다 어려웠고, 교육 재료 등을 계획서를 미리 받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 시니어 (청춘)학교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교육문화분과

사업내용 100세 시대 맞춤교육,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어르신 배움터 운영

사업결과 43명 참여

(12과목 35강, 2개반 운영, 입학 및 졸업식, 소풍,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등)

실행기간 2023. 4.~ 7.(10주간)

수혜대상 43명 입학, 32명 졸업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 마을 어르신들이 10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가 생기고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 긍정 소감 많았음
- ⇒ 시니어 청춘학교를 계기로 바깥 활동을 하시게 되었다고 좋아하셨고 밝아지셔서 좋았다.
- ⇒ 주민총회나 다른 분과 사업에도 참여하시는 등 주민자치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좋았다.

● 사랑의 반찬 꾸러미 전달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건강복지분과

사업내용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사랑의 반찬 꾸러미와 손편지 전달로 이웃 돌봄을 실천

사업결과 총 7회 전달행사

실행기간 2023.4.~ 11.(총 7회)

수혜대상 396명(회차별 대상자 선정은 주민센터 복지서비스팀 협조)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 반찬의 종류와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반찬구성을 보완 변경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 ⇒ 다회용기를 사용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 내년엔 폐현수막 활용한 장바구니에 담아주는 것도 좋겠다(자원봉사나 환경분과와 협의 후)

● 응암2동 어린이 모여라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교육문화분과

사업내용 응암2동 어린이와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 동네에서 다양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체험

사업결과 3회 축제 개최

(출동! 나비원정대, 매바위 썸머페스티벌, 응암2동 매바위 게임랜드)

실행기간 2023. 4.~ 11.

수혜대상 응암2동 어린이 총 1,000여명 참여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 의제 발굴을 열심히 해서 내후년에 다시 하면 좋겠다.
- ⇒ 3, 40대와 10대 미만 아이들의 수가 많다는 응암2동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의제 개발을 하면 좋겠다.
- ⇒ 큰 행사들이라 분과위원만으로는 부족했다.
- ⇒ 타 분과 위원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며 주민자치회 전체가 함께하면 좋겠다.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보드게임, 톡톡!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교육문화분과

사업내용 보드게임 체험과 교육을 통해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사업결과 보드게임 교육 4회, 대여, 보드 페스티벌 개최 1회

실행기간 2023. 7~11.

수혜대상 응암2동 지역 주민 140여명
(보드게임 4회×10명, 매바위 게임랜드- 대회 68명+체험 30여명)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용역업체(노는엄마 협동조합)에서 주로 진행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해 아쉬웠다.

● 아가야! 응암2동 처음이지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자치활성화분과

사업내용 응암2동 출생신고 아기를 축하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손편지와 함께 출산꾸러미를 전달

사업결과 2023년 응암2동 출생 예정자 수 총 225개(계획서) 중 150개 배포
(잔여 수량: 75개)

실행기간 2023. 1~12.

수혜대상 응암2동에 출생신고한 가정 총 150명
(잔여 수량은 24년 소진 시까지 배포 예정)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동 주민이 된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준 꾸러미에 감동했던 어려운 처지의
부모를 보고 짹했다
⇒ 출산 꾸러미 품목이 아쉬웠다(캘리업서 비싸고, 손수건은 선물같지 않음)

● 스마트한 마을 배움터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자치활성화분과

사업내용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단기강좌 운영

사업결과 친환경 보자기포장법(3회), 정리수납의 힘(4회), 파스텔 캐리커처(6회),
김수미 두건만들기(2회), 앞치마만들기(2회), 가방만들기(3회),
작품 전시회-매바위 작은 전시회(2일)

실행기간 2023. 7~11.

수혜대상 응암2동 신청 주민 100여명(프로그램 참여자)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향후 만족도 조사는 꼭 해야 함,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하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 모든 분과와 주민자치회 위원 모두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2024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사업 선정 보고

제5회 주민총회 2023년 선정, 2024년 실행			
분야	사업명	투표수	예산액(천원)
프로그램	사전투표: 984명, 현장투표: 52명, 무효: 19명	4,765	10,000
	찾아가는 치매 예방 활동가 양성 및 지역활동	558	10,000
	시니어 청춘학교	473	10,000
환경	찾아가는 리필 스테이션	404	4,000
	도전! 응암2동 탄소중립 가족 골든벨	258	8,000
	매바위 숲속 지킴이	357	8,000
동 특화	찾아가는 대학, 맞이하는 응암2동 “인생수업 다있소”	217	10,000
	매바위 작은 도서관 활성화	498	10,000
	사랑의 반찬 꾸러미 전달 //	308	10,000
시설	응암2동 아기탄생 기념 나무 심기	740	28,000
	안전한 보행길	952	2,000

2023년 제5회 응암2동 주민총회 결과 및 사진

제5회 응암2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제2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3-11호

2023년 제5회 응암2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4년 자치계획 상정 의제에 대한 응암2동 제5회 주민총회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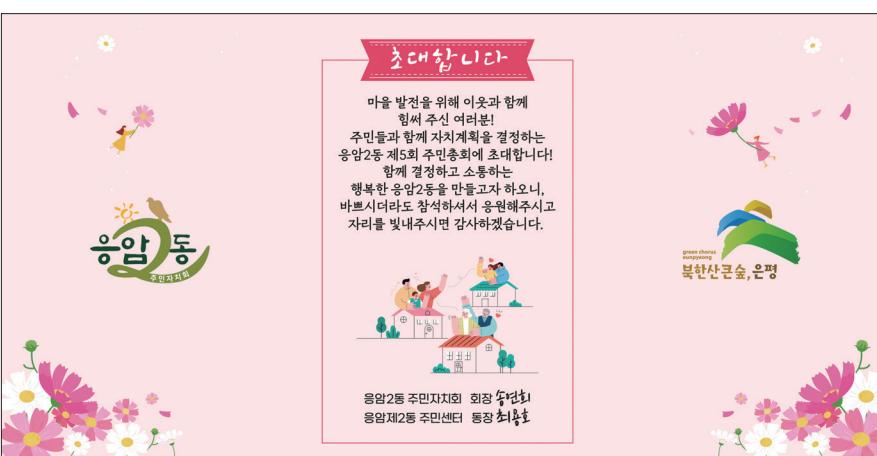
- 운영방식 : 대면 참석(속의공론장 포함)
-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찾아가는 사전투표+ 방문 투표 및 주민총회 현장투표
- 투표기간 : 1) 온라인 투표: 2023.08.12.(토)~ 09.02.(토)
2) 사전 투표: 2023.08.12.(토)~ 09.02.(토)
3) 주민총회 현장 투표: 2023.09.14.
- 대상 : 동 주민(투표권: 만14세 이상 주민, 생활 주민)
- 참여인원 : 1,036명(온라인 및 사전투표 984명, 현장투표 52명)

2. 주민총회 투표결과

구분	사업명	사전	현장	최종	순위
프로그램 사업	1. 아가야! 응암2동은 처음이지 //	406	21	21	21
	2. 시니어 청춘학교	436	37	37	37
	3. 응암2동 어린이 모여라 //	388	18	18	18
	4. 백련산 둘레길 워킹	442	21	21	21
	5. 사회적 고립 위험 주거 취약 가구 안부 살피기	363	13	13	13
	6. 힐링! 바르게 걷기	336	17	17	17
	7. 찾아가는 치매 예방 활동가 양성 및 지역 활동	529	29	29	29
시설 사업	1. 응암2동 아기 탄생 기념 나무 심기	700	40	740	승인
	비동의	255	12	267	
환경 사업	2. 안전한 보행길	910	42	952	승인
	비동의	48	9	57	
동 특화사업	1. 찾아가는 리필 스테이션	391	13	404	1위
	2. 도전! 응암2동 탄소 중립 가족 골든벨	239	19	258	3위
	3. 매바위 숲속 지킴이	339	18	357	2위

이상과 같이 응암2동 제5회 주민총회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주최 : 응암2동 주민자치회(02-389-9599) ○ 협조: 응암2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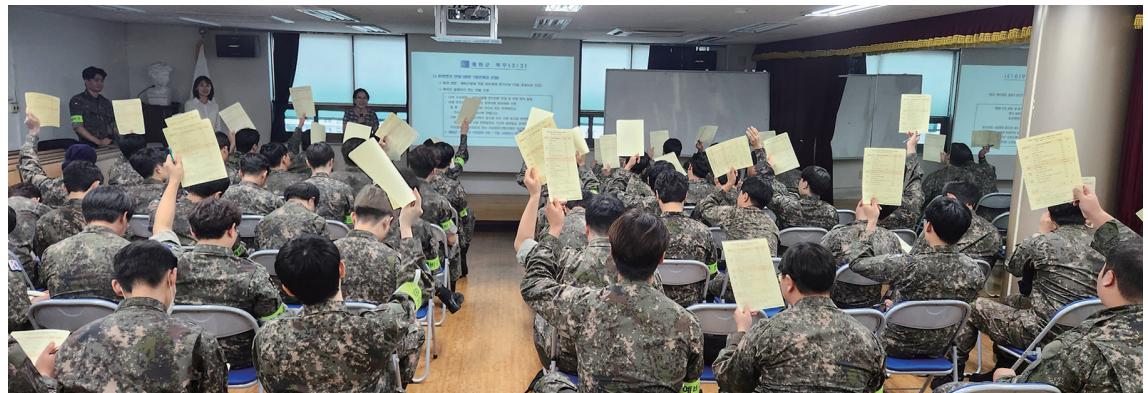


주민총회 식순

- | | |
|-------|-------------------------------------|
| 09:50 | ◦ 식전 : 축하공연(시나어 컵타, 어린이 합창) |
| 10:10 | ◦ 국민의례 |
| | ◦ 내빈 소개 및 인사말 |
| | ◦ 주민자치회 회장 인사말 |
| | ◦ 민관협력 공동추진 협약체결 |
| | ◦ 응암2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
| 10:40 | ◦ 2024년 주민제안 의제 발표 및 숙의-은평구 참여예산 사업 |
| 11:20 | ◦ 현장투표 진행 |
| | ◦ 투표 집계 및 축하 공연(밸리댄스) |
| | ◦ 최종 투표 결과 발표 |
| 11:40 | ◦ 폐회 선언 및 기념 촬영 |



2023년 응암2동
실행 사업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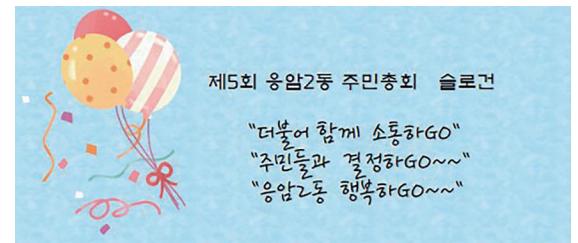
2023년 응암2동 실행 사업 진행 사진 (상반기)



2023년 응암2동 실행 사업 진행 사진 (하반기)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활동 사진 (상반기)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활동 사진 (하반기)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3.8.개정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9. 3. 29. 내규수립 워크숍	의견수렴 및 논의
2019. 4. 4. 내규수립 워크숍	초안 검토 및 의견수렴
2019. 4. 26. 정기회의	운영세칙 검토 및 의결
2020. 12. 22. 정기회의	1차 개정 의결
2021. 5. 20. 정기회의	2차 개정 의결
2022. 4. 21. 정기회의	3차 개정 의결
2023. 8. 17. 정기회의	4차 개정안 의결

2023. 8. 17.

응암2동 주민자치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응암2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응암2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응암2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분과장(또는 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응암2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응암2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및 전 응암2동 자치회장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응암2동 주민자치회" (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응암2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 인적사항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한다.
- ④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정원의 20%를 초과하는 결원 발생 시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할 수 있다.(23. 08. 17. 부분 수정)

제10조(위원의 해촉)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연 3회) 및 분과회의(연간6회)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사전 통보 연간 2회 시 예외로 인정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6. 주민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위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장에게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

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운영진·사무국 구성 및 임기)

-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분과별 분과장(또는 분과총무) 각 1명
 - ③ 사무국 구성은 모집공고를 통해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
 1. 서류심사는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한다.
 2. 면접은 내부위원, 외부인사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5명 이내로 정한다.
 3. 내부위원은 회장, 부회장으로 하며 외부인사는 동장(또는 행정팀장) 그 외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직능단체장 2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임원·운영진·사무국구성)

-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분과장은 해당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제13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출의 선정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부회장·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임원·운영진의 임무)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청장에게 회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④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관掌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운영진·사무국 해임)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운영진·사무국은 제22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임원·운영진·사무국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사임)

- ① 임원·운영진·위원·사무국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장이 사임을 승인한 경우 사임한 것으로 한다.
- ②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임원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 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여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응암2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주민을 분과원으로 한다.
- ④ 분과원은 분과활동을 신청한 응암2동 주민으로서 3개월 이상 분과활동을 한 주민을 의미하며, 분과회의 참석시 의결권은 있다. 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⑤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장(또는 분과총무)을 선출한다.
- ⑦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제21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운영회의
 4. 분과회의
 5. 사무국회의
 6. 민관협력회의
-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또는 간사) 제1항의 2호 3호 6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

료 후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2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만 14세 이상의 주민(응암2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1%(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⑧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 물품가액)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①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7.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분과장, 분과총무로 구성한다.
- ④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 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5조(분과회의)

-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회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6조(사무국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국회의를 둔다.
- ② 사무국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 할 수 있다.

제27조(민관협력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 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의결)

-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변경(제정·개정·폐지)
 2.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제29조(자치계획 수립)

-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치회관 운영

제30조(자치회관 운영)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제33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또는 간사)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제32조 각호의 재정은 분리 관리한다.
- ③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출은 주민자치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한다. 분과 사업일 경우 분과장의 결재도 받을 수 있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직인)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이 사무국장(또는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사무국장(또는 간사)은 직인 날인 사항을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 한 후 처리한다. 또한 월별로 자치회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7조(사무의 인계)

- ① 임원·분과장·사무국은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 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업무 대행위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인수인계 시점은 사임하는 날 10일 전으로 한다.

제3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 대장
 3.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자치회장을 보관 책임

자로 하며 정부로 나누어 정은 사무국장, 부는 간사로 한다.

④ 문서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9조(물품보관) 주민자치회의 물품 및 비품은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연 1회 감사의 검수를 받으며 폐기물품은 감사의 검수 후 폐기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분과회의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정기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기타)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2023년 응암2동 주민자치회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기획·편집	김혜자
발행처	응암2동 주민자치회
디자인·제작	권순미디자인
주소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100 응암2동주민센터
전화	02-351-5264